



# 대학 발전 기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배 병 일 | 영남대 법학부 교수

## I. 서론

우리 나라 대학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는 들 수 있는 것이 재무구조의 취약성이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학생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로서는 취약한 재정 구조 및 운용 상태가 문제로 되고 있다. 대학 발전 기금은 이러한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이다. 대학 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대학의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부에 의하여 출연(出捐)받은 금전이나 주식, 부동산 등 재물을 말한다.

대체로 대학 발전 기금은 각 대학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사립대학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나중에는 국·공립대학들도 나서게 되었다.

최근 비영리 법인인 사립대학의 학교 법인에 대한 국제청의 세무 조사에서 대학 발전 기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일부 대학에서 정신적 교육적 금전적으로 크게 기여한 인물, 가문, 기업, 단체에 대해 보은의 차원에서 그 자녀에게 대학 입학의 혜택을 주는 기여 입학제 혹은 기부

금 입학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대학 발전 기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 방안이 강구될 시점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발전 기금을 규율하는 근거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대학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대학 발전 기금의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대학 발전 기금의 의의

발전 기금에는 법률상으로는 방송법상의 발전 기금과 여성발전기본법상의 발전 기금 등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상의 발전 기금이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동 법 시행령,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대학의 발전 기금은 관련 규정도 없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조의 대학현장에서 희미하게 찾을 수 있다. 학교현장에는 재정 운용에 관한 계획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대학은 여기에 근거하여 대학 발전 기금 규정을 자체적으

로 두고 있다. 물론 공익법인으로서 학술 진흥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술 진흥 재단의 법인 정관이나 그에 근거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 Ⅲ. 대학 발전 기금의 연혁과 현황

우리 나라 대학에 발전 기금이 도입된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 영남대학교의 경우는 199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국·공립대학처럼 별도의 학술 진흥 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발전 기금의 접수창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립대학처럼 그 자체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학교 자체기구로서 발전 기금 운영 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접수하는 경우(물론 사립대학에서도 학술 진흥 재단과 같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있다)도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의 발전 기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금 출연이 많고, 기타 현물 출연도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현물 출연의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있고, 사후 관리상 문제도 있다. 또한 출연한 현물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현금 출연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모금액은 수도권 몇 개 대학들이 매우 많은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지방의 대학들은 미미한 금액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간 대학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종래 포괄적인 모금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목적을 지정한 목적 지정이 많아지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경우도 1995년까지는 일반 기금으로 포괄적 모금을 하였지만, 1996년부터 목적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우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단과대학, 학과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경쟁 도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었다. 모금 방법은 일반적

으로 직접 방문이나 지로 용지를 통한 기금 모금 방법을 이용하지만, 이벤트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모금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미술 전공 교수들이 그림이나 조각 전시회를 통하여 모금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 실효성이 문제되고, 구입 대상자들이 학부형이나 학교 관련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개 특별 기념 행사를 통하여 한꺼번에 대규모로 모금하는 방법이 있지만, 약정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법적 강제 이행을 구할 수 없는 등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소액 다수 모금 체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 또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Ⅳ. 대학 발전 기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

그 동안 대학 발전 기금은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규정이 전혀 없이 각 대학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모금 운용되어 왔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발전 기금 등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 및 책임자를 임명하여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감사한 결과,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할 발전기금을 학교 회계와 통합 관리하였다고 주의 요구한 사례(교육부 감사백서, 1998, 53)가 있고, 학교법인의 기부금 수탁처리는 최소한 기부자, 기부 목적, 기부 금액이 명시된 기부 증서(또는 출연 증서)를 갖춘 후 수입 처리함에도 기부 경위가 불명한 채 수입 결의서만으로 처리하였다고 지적한 사례(교육부 감사백서, 1998, 75)가 있다. 또한 자산 1,554억원이라는 방대한 기금 규모 등에 비추어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 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부 집행 지침 없이 각 부서장이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사례(교

육부 감사백서, 1999, 44)와 조성한 발전 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10개 부서는 기금 조성을 하고서도 별도의 기금 관리 방안 없이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사례(교육부 감사백서, 1999, 44) 등이 있다. 이처럼 각 대학마다 발전 기금을 교비회계에 두고 운영을 하다가 매년 교육부의 감사에 지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이외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바, 이하에서 간략히 보고자 한다.

###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문제점

대학 발전 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의 관련 하여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발전 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학외의 외부인이나 기관으로부터 발전 기금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 금품이란 환영 금품·축하금품·찬조 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고, 대학 발전 기금은 이에 해당한다.

먼저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 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또한 제 5조 제 2항 단서에 의한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접수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러나 제 2조 제 1호 다목에 의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소속원 또는 제 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원 즉 교직원, 학생으로부터

발전 기금을 모금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를 그 소속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외부인은 당연히 소속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을 상대로 국·공립대학이 직접 자체적으로 발전 기금을 모금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에서는 발전 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형태의 학술진흥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장학금·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의 보조나 지급, 학문 연구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등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재단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와 같은 학술진흥 재단이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4조 제 2항 제 4호에 의하여 공익목적사업 등을 위한 기부 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발전 기금의 모금은 가능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여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 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기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각출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발전 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술진흥 재단이나 학교법인의 산하 기관인 사립대학이 교직원이나 학생들로부터의 기금 모금 행위는 문제가 없지만, 외부인으로부터의 학교 발전 기금 모금은 문제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발전 기금을 모금하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외부인으로부터 다액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학부모나 졸업생인 동창회원이 그 소속원

인지 여부가 문제 되겠지만, 외부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학 발전 기금제도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입법론적으로 법 제정이나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가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후자의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2.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제점

먼저 기업 등 영리 법인이 발전 기금으로 대학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감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등 법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수익 중 일부를 대학 등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경우에 그 기부금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부담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부의 사회적 환원도 이룩하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발전 기금의 조성이 활발하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학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등 법인이 국·공립대학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24조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 전액(전액공제 제도)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기업 등 법인이 국·공립대학이 설립·운영하는 학술 진흥 재단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 24조 제 1항, 동 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1호 다목 및 제 2호 가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받은 학술 연구 단체·장학 단체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국·공립대학 총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손금 산입 한도액의 범위(5%제도)내에서 손금 산입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 진흥 재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에 의한 감면 혜택은 없어 매우 불리하다.

한편 기업 등 법인이 사립대학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24조 제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1호 나목 및 제 2호 가목에 의하여 기업 등 영리법인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즉 사립대학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사립대학의 총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5%제도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여 기업 등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50%제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사립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0%제도의 적용이 있지만, 총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5%제도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등 법인이 발전 기금을 국·공립대학에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 금액 전액이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 사립대학이나 학술진흥재단에 기부하는 경우는 전액이 세제혜택이 되지 않아 불리하지만, 사립대학의 50%제도가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학술 진흥 재단의 5%제도보다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다음으로 개인이 발전 기금으로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 경비의 문제가 있다. 특히 개인 근로소득자가 발전 기금을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개인이 국·공립대학에 발전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34조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 전액이 필요 경비에 산입된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이 설립·운영하는 학술 진흥 재단에 기부하는 발전 기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8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이 되어 10%제도가 적용되어 필요 경비로 산입된다.

개인이 사립대학에 발전 기금을 출연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 34조 제 2항 제 6호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즉 사립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이 필요 경비에 산입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 34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80조 제 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 1항 제 2호 가목에 의하여 총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10%제도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발전 기금으로 기부금을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이 필요 경비 또는 기부금공제 제도에 의하여 소득세 혜택이 있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이 설립·운영하는 학술 진흥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34조 제 1항에 의하여 10%제도의 적용이 있게 되어 출연하는 개인에게는 사립대학보다 불리하다.

결론적으로 기업 등 법인이 대학에 발전 기금으

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중 어느 대학에 출연하는가에 따라서 법인세제상의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에 편중될 수 있지만, 국·공립대학이 학술 진흥 재단을 설립 운영할 경우에는 5%제도의 적용으로 도리어 사립대학이 유리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는 없지만, 학술 진흥 재단의 경우 10%제도의 적용으로 사립대학이 유리하다. 오늘날 대부분 대학의 발전 기금이 불특정 다수의 소액 기금 위주로 되어 있지만, 기업의 기부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세법상의 정비·개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문제점

기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발전 기금을 받은 대학은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기업 등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개인이 국·공립대학에 발전 기금을 기부한 경우에 이들 대학이 기부받은 발전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 7호에 의하여 국가·지방 자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이들 국·공립대학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인이나 개인이 사립대학에 발전 기금을 기부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 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사립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국·공립대학이 설립·운영하는 학술 진흥 재단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46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 5호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이들 법인 즉 사립대학이나 학술 진흥 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특히 ⑤, ⑧의 경우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⑥과 ⑦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어, 사립대학과 학술진흥재단의 경우는 심각한 세제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①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1항 단서), ②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등(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1호), ③ 출연 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2호),

④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3호), ⑤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4호),

⑥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면서 운용 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즉 사용 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4호의

2 전단 및 동 시행령 제 38조 제 5항), ⑦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중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100분의 30, 2년이내에 매각 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4호의 2 후단 및 동 시행령 제 38조 제 7항), ⑧ 출연 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5호 및 동 시행령 제 38조 제 8항 제 2호).

그러나 ②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1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 38조 제 3항에 의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산의 사용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⑧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5호 및 동 시행령 제 38조 제 8항 제 2호 단서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 범위를 정하여 법인 설립 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은 있지만 이 또한 복잡한 절차를 요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은 발전 기금을 불특정 다수에 의한 소액 기부금이고 이들 금액은 수년간에 걸쳐 모금된 후에 그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것을 발전 기금을 받은 사립대학이 발전 기

금을 교비 회계에 편입시켜 발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의미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발전 기금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위해 이에 대한 세제상의 개정이 요청된다.

#### 4. 국유재산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상의 문제점

먼저 법인이나 개인이 국·공립대학에 발전 기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국공유재산이 된다. 국유재산법 제 3조 및 제 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부동산 등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기부서를 받고 채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유재산은 처분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법 제 39조 내지 42조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국유재산법 제 10조상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은 기부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하여는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 시행령 제 16조에 의하면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기본 재산이 되고, 그 기본 재산을 공익법인이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이 발전 기금을 위하여 학술진흥 재단을 운용할 경우에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할 경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되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또는 선관 주의 의무)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사립학교법과는 달리 임대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국유재산법 제 10조와 같은 제한은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 288조 제 2항에 의하여 위 학술진흥 재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만약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은 없다.

다음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사립대학에 발전 기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사립대학의 기본 재산이 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이 되고,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 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것은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된다. 다만 임대는 허가없이 가능하다. 특히 발전 기금으로 기부된 부동산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되어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 7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나아가 사립대학의 기본 재산이 된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 재산이 될 수 있는 바, 지방세법상 교육용 기본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하여는 수

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담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8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학교 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결국 국·공립대학이 직접 부동산 등을 대학 발전 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유리한 점은 있지만 운영·관리면에서는 제한이 있다. 국·공립 대학이 설립·운영하는 학술진흥 재단이나 사립대학이 직접 부동산 등을 대학 발전 기금으로 出捐받는 경우는 그 부동산 등을 관리 운용면에서 세제상의 전혀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 문제와 관련이 있고 이는 다음 회에 논의하고자 한다.

## V. 대학 발전 기금의 개선 방안

현행 사립학교법상 대학 발전 기금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발전 기금 규정과 같이 규정화가 필요하다. 대학 발전 기금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행정상의 제한 및 감독 기관의 간섭이 우려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법상의 불리한 점이 있기 때

문에 운용상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 학교 내의 자체 기구에 의하되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에 대해 발전 기금 조성 위원회 등의 학내 기구의 설치와 함께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와 교육부에 의한 감사를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종래 약품 리베이트를 대부분 해당 의과대학 교수나 병원이 직접 수수하여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대학 발전 기금으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 발전 기금을 받은 학교나 학교법인, 학술진흥 재단의 경우는 세법상 이를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학 발전 기금의 경우는 대부분 소액이어서 출연받은 당해 연도나 그 익년에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수년간 축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 하지만,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 기금을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를 두는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 **☞**

### 배병일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릉대 부교수, 미국 워싱턴 주립대 교환교수, 영남대 취업센터 소장, 생활관장, 기획부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남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물권법』 등 다수가 있으며, 논문으로 "사학법인 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의료 과오의 민사적 책임에 관한 연구" 외 70여 편이 있다.